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가단52081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7. 2. 3.

판결 선고 2017. 3.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656,509원 및 그 중 170,967,578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10%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6. 3. 28.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6. 3. 28.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임성철

별지